

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재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1년 12월 13일
- 회부일자 : 2001년 12월 14일

3. 제정이유

- 충북체육회관 건립으로 체육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충북체육회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있어
- 수익사업을 위한 전대가 불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체육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
- 체육회관 위치를 현주소로 조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체육회관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
 - “청주시 방서동 38-1번지”를
 - ⇒ “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-7, 57-4번지”로 함

- 수탁 운영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타인 또는 법인에게
 - “전대 및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”를
 - ⇒ “전대할 수 있으나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”로 함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수탁운영중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전대가 불가능 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전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리도 체육회관 시설에 대하여 전대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회관 주소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